
한미 FTA 주요 쟁점과 대응

2011. 6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목 차



I. 추가협상에 대하여

1. 추가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1
2. 추가협상은 안보와 거래한 협상이었다? 3
3. 자동차 관세철폐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4
4. 자동차 관련 국내 안전·환경기준을 포기했다? 6
5.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우리 업계에게 불리할 것이다? 7
6. 2007년 원협정은 찬성, 추가협상은 반대가 합리적인가? ... 8

II. 소위 “독소조항” 에 대하여

7.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내용은 주권상실을 초래한다? ... 9
8. 약가폭등이 우려되는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삭제되어야 한다? 10
9. 서비스시장을 과도하게 개방하였다? 11
10. 한·미 FTA로 인해 금융시장은 개방이 가속화되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12
11. 한·미 FTA로 보건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다? 13
12. 농산물 시장을 과도하게 개방하였다? 14
13. 독소조항에 대한 재재협상을 해야만 한다? 15

Ⅲ.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에 대하여

- 14.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16
- 15.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허구에 불과하다? 17
- 16. FTA 이익을 소비자들이 실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 18
- 17. 한·미 FTA는 반복지-반서민 정책이다? 19
- 18. 한·미 FTA의 혜택은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 20
- 19. 선진국과의 FTA는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 21
- 20. 한·미 FTA가 비준 안될 경우 국가적 비용은 무엇인가? 22
- 21.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3

Ⅳ. 기타 사안에 대하여

- 22.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24
- 23. 현재 실효성이 낮은 개성공단 내용을 강화하기 위해 재협상되어야 한다? 25
- 24. 일본, 중국, 캐나다 등 경쟁국가들의 한·미/한·EU FTA에 대한 평가는 무엇인가? 26

I. 추가협상에 대하여

Q1

추가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1. 추가협상 이후에도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입니다.

-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극히 일부분에 제한되어 진행된 것으로, 한·미 FTA 전체의 경제적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 한·미 FTA 경제적 효과 (2007.4월, 11개 국책연구기관 발표)

- (발효후 10년간) 일자리 34만개 창출, GDP 6% 증가, 대미 흑자 46억불 증가

- 추가 협상만으로도 이익의 균형이 유지되었습니다.

- 우리 대기업이 이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는 완성자동차 분야에서 일정한 수준 미측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한편,
- 국내에 대부분 영세하거나 중소기업인 양돈산업과 제약산업에 대한 추가적 보호장치와 우리 미국진출 상사주재원들의 기본적 활동 요건인 비자의 유효기간 연장을 얻어냈습니다.

※ 추가협상 우리측 관심사항 반영 내용

-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을 2년 연장 (연간 대미 1.6억불 수입)
- 복제의약품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을 우리만 3년 유예
- 우리 기업의 미국내 현지주재원 비자 유효기간 연장 (1년 또는 3년 → 5년)

2. 우리 기업과 업계가 환영합니다.

- 자동차공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제약협회, 양돈협회 등 우리 경제계는 추가협상 타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한·미 FTA 발효를 3년이상 기다려온 우리 기업들은 추가협상을 통해 한·미 FTA가 조기 발효될 수 있게 되어, 미국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3. 경쟁국가 기업도 부러워합니다.

- 일본·캐나다·프랑스 언론 등은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자국기업들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출하였습니다.

※ (2010.12.4일자 아사히 신문) “ 한국은 한미 FTA 합의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4. 우리 국민도 지지합니다.

- 국내 여론은 한·미 FTA 비준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 KBS(2011.1.1) : 찬성 60%, 반대 27%
 - 조선일보(2011.5.12) : 찬성 63%, 반대 27%
 - 매일경제(2011.5.16) : 찬성 60%, 반대 22%

1. 추가협상이 안보와 거래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 추가협상 합의 사항에 우리가 안보와 관련하여 우리측이 양보하거나 또는 미측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대가도 없습니다.

2. 추가협상은 철저히 경제통상적인 관점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 추가협상 결과는 양국 이해가 균형되게 반영된 것입니다.
 - 우리가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측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
 - 돼지고기, 제약산업, 현지주채원 비자 등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3. 추가협상은 치열한 밀고 당기기 과정이었습니다.

- 우리 협상단은 추가협상 과정에 협상을 중단하고 귀국하는 것을 몇 번이나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였습니다.
- 추가협상 4일동안 총 20회의 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치열한 협상과정에서 안보를 고려할 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 만약, 안보적 측면을 고려했다면 우리측 관심사항을 반영한 균형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 미국의 자동차 시장은 우리의 8배 규모입니다.

(韓 147만대 vs. 美 1,155만대)

- 미국은 세계 최대의 단일 자동차 시장입니다.
- 양국의 자동차 시장규모와 그동안 자동차 교역구조를 고려할 때, 아무리 보아도 자동차 관세철폐 일정은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 ※ 자동차 시장 규모(2010년): (한국) 147만대 (미국) 1,155만대
- 또한, 우리의 대미 수출이 증가추세인 자동차부품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미국 시장에서 더욱 선전이 기대됩니다.

2. 우리 자동차의 대미수출은 대미수입의 40배 규모입니다.

(수출 51만대 vs. 수입 1.3만대)

-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월등히 많은 현재 양국간 자동차 교역구조를 볼 때, 우리가 양보한 것은 아닙니다.

3. 반면, 우리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미국의 3배 이상입니다.

(韓 8% vs. 美 2.5%)

- 승용차 관세철폐 일정은 한·미 양국이 함께 조정하였습니다.
 - 승용차에 대한 우리 관세가 발효 즉시 4%로 감축되지만, 여전히 미국 보다는 높은 관세율이 발효후 4년간 유지됩니다.

4. 우리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으로 인해 미국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우리 자동차의 미국시장 진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 현대기아차 미국시장 점유율 : 7.7% (2010. 7위) → 9.4% (2011.4월, 6위) → 10.1% (2011.5월, 5위)

5. 한편,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 자동차부문 대미 수출의 약 38%(2010년)를 차지하는 부품은 기존 협정대로 관세가 즉시 철폐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對미 자동차부품 수출액 비중 (자동차부품 對미 수출액/자동차 분야 對미 수출액)
: 22.9%(2006, 25.9억불)→26.8%(2008, 27.0억불)→37.9%(2010, 41.2억불)

1. 승용차 안전기준은 우리와 미국이 유사합니다.

- 자동차 역사가 오래 된 미국의 안전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부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마련하면서, 미국의 기준을 많이 참고해 오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산업의 기본 가치인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업계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 2010년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 규모 : 147만대 (수입차 10만대, 7.6% 점유)

2. 정부의 외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환경 규제는 계속 가능합니다.

-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협상 교환서한 제2절 제4항 가목)

3. 추가협상 결과에서도 국내 환경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됩니다.

- 추가협상에서 한·미 FTA와는 별도로 합의된 온실가스·연비 기준 완화대상 (2009년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제작사)은 우리 시장에서 비해 극히 일부분 (11,237대, 0.9%)에 불과하여 우리 환경규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온실가스·연비 기준 완화 조치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제도입니다.

Q5**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우리 업계에게 불리할 것이다?****1.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양국 상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현행 수입관세 상 우리는 8%, 미국은 2.5%의 관세를 올릴 수 있어 미국의 관세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세계적으로 발동된 사례가 없습니다.

- 미국이 자동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는 없으며, 95년 이후의 WTO 통계상으로도 세계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3. 우리 자동차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우리 자동차의 미국내 현지생산 증가 및 직접 수출 감소 추세를 볼 때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인 수입급증이 충족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승용차 대미 시장 진출 현황

(단위: 대수, 비중(%))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693,124 (74.5)	667,999 (72.7)	598,126 (71.6)	449,403 (68.1)	512,986 (53.0)
현지생산	236,773 (25.5)	250,519 (27.3)	237,042 (28.4)	210,566 (31.9)	454,164 (47.0)
총계	929,897	918,518	835,168	659,969	967,151

4. 자동차 세이프가드는 자동차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리 자동차부품은 미국내 현지생산 증가, 국제경쟁력 확보 등으로 인해 대미 자동차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10년 37.9%)이 증가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대미수출 현황

(단위: 억불, 증가율(%))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대미 수출	26	28(7.7)	27(-3.6)	21(-22.2)	41(95.2)
대세계 수출	102	124(22.0)	140(12.9)	117(-16.4)	190(62.0)

* 2010년 완성차 대미 수출 66.2억불 (51.3만대) / 자동차 부품 수출 41억불

1. 2007년 원협정을 타결시킨 지난 정부는 한·미 FTA는 성공적인 협정이라고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 한·미 FTA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원협정 체결 당시 협정을 지지하고, 지금에 와서 협정 상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2. 추가협상은 3년이상 식물인간이었던 원 협정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처방이었습니다.

- 추가협상이 없었다면 한·미 FTA는 아직까지도 언제 비준·발효될지 안개속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 서명후 4년이 경과한 한·미 FTA의 발효가 계속 지연된다면, 결국 우리 기업과 경제가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 2007.7월 대한상의 보고서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시, 연간 15.2조원의 기회비용 발생을 추정

3. 추가협상은 일방적 양보가 아닌 이익 균형이 반영되었습니다.

- 우리 대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측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면서,
 - 영세한 양돈산업, 제약산업 그리고 현지주재원 비자 등에서 우리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하여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였습니다.

4. 추가협상 후에도 2007년 원협정의 큰 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이제 원 협정과 추가협상 결과는 내용상 뗄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헌법상 우리 국회의 조약에 대한 권한이 가부 결정만이 가능하므로, 추가협상 결과에 반대는 원협정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극히 일부분에 제한되어 진행된 것으로, 한·미 FTA 전체의 경제적 혜택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II. 소위 “독소조항” 에 대하여

Q7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내용은 주권상실을 초래한다?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 ISD)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유치국의 불법·부당한 조치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의한 구제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중재 또는 분쟁해결을 구하는 제도를 의미

1. ISD는 반세기동안 여러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 ISD는 전세계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2,500여개 양자간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 우리가 체결하여 발효중인 모든 FTA(5개)와 85개 양자간투자협정의 대부분에도 IS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EU 회원국들과는 개별 투자협정에서 ISD를 반영 (한·EU FTA에는 미반영)
- ISD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3. ISD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보다 크므로, ISD 제도를 통한 투자 보호가 우리 기업에게도 필요합니다.
 - ※ 우리의 대세계·대미 해외투자·투자유치 규모 (1968~2010년간 누적금액)
 - 對세계 : (한국→세계) 2,408억불, (세계→한국) 1,736억불
 - 對미국 : (한국→미국) 408억불, (미국→한국) 438억불
- 미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對미 투자액 > 對한국 투자액)
- ISD를 통해 투자 대상국의 사법제도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공정한 국제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ISD와 우리의 정당한 공공정책 추진은 무관합니다.

- 정부의 정당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피해는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책은 물론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도 정부가 간접적으로 외국 투자를 수용하는 개념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ISD 대상이 아닙니다. (부속서 11-나 제3항 나목)

약가폭등이 우려되는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는 삭제되어야 한다?

☞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 의무란 복제의약품 시판하고자 하는 자가 특허권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식약청에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심사단계에서 특허권자의 동의·목인이 없이는 복제약이 시판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제도를 의미

1. 특허권 보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기본적인 정책방향입니다.

- 특허권 보호는 우리 경제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 복제약 시판허가-특허 연계의무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하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의약품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국내 사법적 구제(가처분 소송, 손해배상소송 등)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시판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이 약가 폭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우려입니다.

- 의약품 가격은 정부가 마련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업계가 약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신약 및 복제약의 약가인하를 위해 다양한 약가 인하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우리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 허가·특허 연계를 통한 특허권 보호의 강화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 정부는 2007년에 마련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조원 규모)을 충실히 시행중

4. 발효후 3년동안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 정부는 3년 유예기간동안 국내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협정내용과 합치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마련할 것입니다.

1.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은 제한적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하였습니다.
 - 한·미 FTA에 따른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우리의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한·미 FTA에서 서비스시장의 추가적 개방은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인 판단하에, 일부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개방하였습니다. (법무·세무·회계시장의 단계적 개방 등)

2. 공공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규제권한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있는 공공서비스(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와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방송, 에너지, 외국인투자 등) 44개 분야는 “미래유보*”를 설정하여 협정 발효 후에도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권한 행사가 가능합니다.
 - * 미래유보: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서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정부 권리를 유보

3. 공공풍속을 해치는 서비스산업의 규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정부 규제는 강화할 수 있도록 협정문상 명시 하였습니다. (부속서 II 첫 번째 유보)
 - 한·미 FTA와 WTO 협정문 상의 예외 조항을 활용해서도 도박 등 공공풍속을 해치는 서비스 산업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제23.1조 제2항, WTO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제14조)

4. 한·미 FTA의 서비스시장 개방수준은 한·EU FTA와 동일합니다.
 - 한·미 FTA와 한·EU FTA는 서비스시장 개방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 개방내용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 ※ 한·미 FTA :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열거 (네거티브 방식)
 - ※ 한·EU FTA : 개방하려는 분야를 열거 (포지티브 방식)

1.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 우리 금융시장은 1996년 OECD 가입 및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 등을 통해 이미 상당 부분 개방되어 있으며, 이미 외국자본에 대한 감독 및 규제 시스템 등 안전장치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은행의 공적인 기능이 제약되지 않습니다.

- 한·미 FTA에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도록 요구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속서 III 부록 III-가 라목)
- 국책금융기관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고려하여 부여되는 혜택인 지급보증, 손실보전 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속서 III 제1절 12번째 유보)

3. 우리 정부는 국제투기자본의 국내은행 소유를 계속 규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자본이 국내은행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속서 III 제1절 세 번째 유보)

4. 외국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도 유지됩니다.

- 외국 대부업자도 이자율 상한제 등 국내 규제의 적용을 계속 그대로 받게 됩니다. (부속서 III 부록 III-가 카목)

5. 한·미 FTA는 충분한 금융안정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신금융상품에 대한 현행 규제를 유지하고, 단기 금융 세이프가드 발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조치를 언제라도 도입 가능합니다. (신금융서비스 관련 부속서한, 부속서 11-사, 제13.10조)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한·미 FTA는 공적 건강보험체계와 관련된 정책을 협정의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제13.1조제3항 가목)
- 따라서, 일부 우려와는 달리 한·미 FTA 발효후에도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은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의료서비스 시장은 추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 보건의료 서비스는 우리 정부는 미래에도 어떠한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 II 35번째 유보)

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은 한·미 FTA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외국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은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허용된 것입니다.

1. 한·미 FTA는 농산물의 민감성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10년이상 장기간 관세감축기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예외적 취급 수단을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 유지, 계절관세* 도입, 수입 급증시 농업세이프가드** 발동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계절관세: 계절별로 가격차가 큰 농산물에 대해 계절구분에 따라 기본관세율보다 높거나 낮은 세율을 차별하여 부과하는 관세(예를 들어, 우리 감귤 성수기에 오렌지에 고관세를 부과)

** 농업세이프가드: 일부 민감 농산물에 대해 미리 정해둔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농산물에 대한 특혜관세율을 일반 관세율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

2. 수입 농산물간 경쟁 촉진으로 수입산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 인하가 기대됩니다.

○ 이미 시장이 개방된 일부 품목의 경우 대미 수입이 증가한다고 해도 기존 수입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입농산물간 경쟁 촉진을 통한 수입농산물의 가격인하 효과는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 농업분야에 21조원 규모의 피해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부는 한·미 FTA 체결(2007.4월)을 계기로 총 21.1조원(2008-2017년간 추진 대상)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을 2007.11월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 이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5.9조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차질없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FTA국내보완대책 예산 및 집행 현황>

(단위 : 조원)

2008 예산(집행)	2009 예산(집행)	2010 예산(집행)	2011 예산	계
1.3 (0.8)	1.4 (1.1)	1.6 (1.3)	1.7	5.9

1. 한·미 FTA에 소위 독소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소위 독소조항 주장은 “한·미 FTA라는 사과에 독칠을 하여 못 먹게 하려는” 시도로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정치적 공방입니다.

※ 예를 들어, 자유화역진방지 조항으로 인해 광우병이 창궐하여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지 못한다는 주장은, 동 조항이 서비스·투자 분야에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상품 분야까지 확대·적용한 허황된 주장임.

2. 소위 독소조항이라 왜곡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미래 최혜국대우, 자유화수준 후퇴방지 등 일각에서 독소조항이라 왜곡하는 내용들은 투자보호 및 무역자유화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도들이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중입니다.

3. 우려가 제기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안전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 ISD, 역진방지 등 서비스·투자 분야에 적용되는 개념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분야 또는 여타 민감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부속서 II)
-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3년 유예기간 동안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이 검토할 것입니다.

4. 재재협상 주장은 한·미 FTA를 폐기하려는 시도입니다.

- 양국내 비준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단계에서 재재협상 요구는 한·미 FTA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동일합니다.

Ⅲ. 경제적 효과 및 국내보완대책에 대하여

Q14

한·미 FTA로 추가협상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1. 추가협상으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추가협상은 제한적 분야*에 국한되어 합의된 것으로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달라질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 승용차 관세철폐 4년 유예, 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2년 연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시행시점 3년 연기

○ 2007.4월 11개 국책연구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GDP는 6.0%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총 34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추가협상에 따른 개별 산업에 대한 영향은 점검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국책연구기관에서 자동차(산업연구원), 냉동돼지고기(농촌경제연구원), 복제의약품(보건산업진흥원)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1. 한·미 FTA 경제적 효과는 전문 연구기관이 객관적, 자율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였습니다.
- 또한 그 결과를 2007.4월에 발표하였으며,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분석 방법도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2.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분석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시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GTAP (Global Trade Analysis Project)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 * 미국 퍼듀대학교가 주도하고, WTO, OECD, 세계은행 등 26개 기관이 참여하여 개발한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으로서, 선진국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 민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객관성·중립성을 높였습니다.

- 분석방법과 결과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등 민간전문가의 검토(2007.4.24)를 거쳤으며, 연구방법과 과정에 있어 정부가 영향을 미친 바는 전혀 없습니다.

1. 소비자 혜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낮은 수준입니다.
 - 소비자들은 사계절에 걸쳐 신선한 포도를 저렴한 가격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꾸미도 쉽게 맛볼 수 있습니다.
 - 특히, 포도의 경우 국산포도 출하기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비출하기에는 관세를 낮춰 국산포도 재배농가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2. 농수산물과 같이 소비자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품목은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습니다.
 - 이는 개방에 취약한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 때문입니다.
 3. 일부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여 FTA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유통시장의 선진화, 부당한 공동행위 근절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4. 상대국의 시장상황과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 수입품목의 현지가격이 인상되거나 환율이 올라 관세 인하폭 만큼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하지만, 미국·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FTA 특혜무역의 비중이 36% 수준까지 확대되며,
 - 이에 따라 의류·가방과 같은 저가 제품부터 자동차와 같은 고가제품에 이르기까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FTA 효과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 ※ 2009년 현재 FTA 특혜무역 비중 : (우리나라) 14.4%, (세계평균) 55%
(특혜무역비중 산출방식 : FTA 체결국과의 교역액/대세계 교역액)

1. 한·미 FTA가 제공할 일자리야말로 진정한 친서민 정책입니다.

- 한·미 FTA 발효후, 10년간 약 34만개 일자리가 창출되어, 우리 서민과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와 영세 상인에게는 21조원의 보완대책과 국내 관련 제도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2. 한·미 FTA는 서민들을 위한 물가 안정에 기여합니다.

- 미국산 수입 제품의 78%가 한·미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어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 또한 수입선이 다변화됨에 따라 수입 제품간 경쟁이 심화되어 수입 제품의 가격 인하가 기대됩니다.

3. 일부 주장과는 달리 한·미 FTA는 공공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 즉, 협정 발효 후에도 보건의료, 상하수도 등 공공서비스 관련 법령과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 II 12번째 유보, 35번째 유보 등)
-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역시 한·미 FTA에 관계없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속서 II 2번째 유보)

1. 우리나라는 대기업-중소기업의 협력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로 인해 대기업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도 매출이 늘고 고용도 증가할 것입니다.

※ 현대기아차의 중소협력업체수는 총 5,000여개, 이들의 고용규모는 35만명에 이릅니다.

2. 한·미 FTA 혜택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입니다.

-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의 관세가 철폐되면 제조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제조업체 약 32만여개의 99.8%)들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관세가 비교적 높은 섬유분야 관세(평균 13%)가 철폐되면, 중국, 베트남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수출이 확대될 것입니다.
- 또한 현재에도 급증 추세*에 있는 자동차부품 분야의 경우 미국측의 관세(2.5~10%)가 철폐되면 국내 중소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 對미 자동차부품 수출액 비중 (자동차부품 對미 수출액/자동차 분야 對미 수출액)

: 22.9%(2006, 25.9억불)→26.8%(2008, 27.0억불)→37.9%(2010, 41.2억불)

3. 중소기업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우려보다는 기대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2010.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의 72.7%가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경우, 대미 수출증가에 따른 경영개선을 기대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4. 정부는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매출액이 급감한 기업에게는 컨설팅 서비스, 융자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직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구직정보와 재취업 교육을 통해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선진국과의 무역·투자 확대가 우리 경제에 불리한가?

- 우리에게 선진경제권은 총무역에서 37%*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 미국, EU, 일본, 호주, 캐나다와의 2010년 교역 기준

- 선진국과의 FTA가 우리 경제에 불리하다는 논리는 우리가 선진경제권과는 무역·투자 관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선진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보유한 산업 분야도 많습니다.
 - 한편, 우리가 열위인 산업분야는 보호의 그늘에 머물지 말고 선진 기업들과 무역·투자 관계를 통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제도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제도의 투명성 제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우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있습니다.

3. 우리의 선진 거대시장 선점효과를 경쟁 국가들이 부러워합니다.

- 일본·캐나다·프랑스 언론 등은 한국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자국기업들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할 것이라며 경계심을 표출하였습니다.

4. 우리 취약 산업은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협상 과정에서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장기간 관세철폐기간 설정, 특정 내용 시행의 유예 기간 확보 등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선진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1. 한·미 FTA 발효 지연시,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 서명후 4년이 경과한 한·미 FTA의 발효가 계속 지연된다면, 결국 우리 기업과 경제가 연간 15조원의 기회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 2007.7월 대한상의 보고서는 한·미 FTA 비준이 1년 지연시, 연간 15.2조원의 기회비용 발생을 추정

- GDP 성장기회 8조원, 후생증대 2조원, 투자유치 3조원, 무역수지 2.2조원

2.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선점 기회가 상실됩니다.

- 일본·캐나다·프랑스 등에서 부러워하던 미국시장 선점 기회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다른 FTA 체결국가(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경쟁해야만 합니다.

3. 한·미간 경제적·전략적 관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 한국전쟁이후 60년이상 지속되어 온 한·미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 미국은 8월이전 한·미 FTA의 무난한 처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국회가 비준동의를 못한다면 양국 관계 전반에 부정적 충격이 예상됩니다.

4.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신뢰가 저하됩니다.

- 한·미 FTA 비준 실패는 G20 계기로 국제무대에서 격상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 정부는 한·미 FTA 체결(2007.4월)을 계기로 총 21.1조원 규모의 「FTA 국내보완대책(2007.11월)」을 마련하였습니다.

- 농·수산업 분야의 직접적 피해보전(1.3조원) 및 경쟁력 강화(19.8조원)를 지원 합니다.
- 제조업·서비스업 분야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한 피해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응자) 업체당 40억원 한도, (컨설팅) 소요액 80%이내, 업체당 2,400만원 이내

2. 특히 비준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20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 (2008) 1.3조원, (2009) 1.4조원, (2010) 1.6조원, (2011) 1.7조원

-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총 224개 이행과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 115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82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10년 말기준: 완료 115개(완료율 51.3%), 정상추진 82개, 기타(비준연계지연 등) 27개

3. 또한, 한·EU FTA에 대비해서는 축산업 분야에 10년간(2011~2020) 2조원, 화장품·의료기기 분야에 5년간(2011~2015)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한·EU 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여야정간 합의(2011.5.2)로 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소득보전제도 개편, 중소기업통상인에 대한 보호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4. 수립된 FTA 국내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IV. 기타 사안에 대하여

Q22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은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1. 한·미 FTA와 쇠고기 시장 추가 수입개방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 문제는 양국 정부가 2008년 합의한 한·미 수입위생조건 규정에 따라 결정될 사안입니다.
- 따라서, 쇠고기시장 추가 개방과 FTA는 별개의 사안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2. 양국간 수입위생조건에서 협의 요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양국간 협의 절차는 2008년 합의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25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미국은 물론 한국도 필요시에는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11.5.4(수) 미 무역대표가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한·미 FTA 발효 후 2008년 수입위생조건의 완전한 적용과 관련하여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함.

3. 우리 소비자의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수입개방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가 2008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대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 신뢰가 우선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우리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1. 개성공단 제품의 한·미 FTA 적용문제는 협정 발효후 구체화 될 것입니다. (부속서 22-나)

- 협정 발효 1년후,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등 북한내 역외가공지역의 지정 및 원산지 요건 등을 양국간 협의·결정하게 됩니다.
-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양국에 권고되고, 양국내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개성공단 제품은 한·미 FTA 특혜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최근 미 행정명령은 기존 대북제재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 미국이 북한 물자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해오던 기존 조치를 행정명령 형태로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3. 개성공단은 미국내에서도 민감한 이슈입니다.

- 개성공단 관련 내용은 미국내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하여, 2007년 지난 정부도 현재 수준의 개성공단 관련 내용 반영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07.7 열린우리당 한·미 FTA 협상결과 평가보고서 70쪽)

4. 개성공단은 재협상이 아니라, 발효후 양국간 협의가 답입니다.

-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내용의 재협상을 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협정 발효후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채널을 통해 양국 정부간 구체화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1. 경쟁 국가들은 미국·EU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한·미/한·EU FTA 발효로 인해 경쟁 국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 (2010.12.4일자 아사히 신문) “한·미 FTA 발효로 10년뒤인 2020년 일본이 받을 타격이 5조 2천억엔(약 7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보도
 - ※ (2011.5.28일자 매일경제) “대만 경제부 장관이 한·미/한·EU FTA가 국제시장에서 대만의 경쟁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
- 특히, 일본은 보다 적극적인 FTA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 EU와의 FTA 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2011.5.28일자 AFP, AP) “일본과 EU가 정상회담에서 FTA협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대화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

2. 일본차들이 한·미/한·EU FTA 발효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 최근 날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자동차가 FTA를 통해 미국·EU 시장에서 무관세 혜택(미국 2.5%, EU 10%)을 받게 될 경우, 일본 자동차 보다 유리한 여건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 (2011.5월 미국시장 자동차 판매실적)
 - 크라이슬러 11.5만대 (3위), 도요타 10.8만대 (4위), 현대·기아차 10.7만대 (5위), 혼다 9.1만대 (6위), 닛산 7.6만대 (7위)

3. 우리는 미국·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 우리는 양대 거대시장인 미국과 EU와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미국·EU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를 선택할 유인이 커졌습니다.